

**라이나손보**A Chubb Company
에이스손해보험의 새 브랜드입니다.라이나손해보험
(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),
처브그룹 컴퍼니
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
라이나타워 14,15층대표번호+82 2 2127 2400
고객센터1566 5800
www.chubb.com/kr

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,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.

질병사망 특별약관 사업방법서 별지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-상해/상해

2. 보험종목의 명칭 : 질병사망특별약관

3. 보험의 목적

1) 피보험자의 신체

4.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

- 1) 보험기간 :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2) 보험료 납입주기 :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.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으며, 보험기간별 보험료납입주기는 아래와 같다.

보험기간	보험료 납입주기
1년	일시납, 2회납, 4회납, 12회납
2년, 3년	일시납

5. 배당에 관한 사항

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
6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「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7. 특별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

- 1) 본 특별약관의 보장내용과 부합하는 동기간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손해보험 단체 상품중 본 특별약관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담보가 없는 단체 상품에 한하여 본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판매할 수 있음.
- 2) 본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특별약관이 부과된 기본계약을 따름.

8. 기타

1) 질병사망 특별약관 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

- ① 보험만기는 80세 이하로 함
- ②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

2)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판매금지에 관한 사항

- ① 대상자 : 만 15세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

② 판매금지 :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

3)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피보험자(종업원)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(단체 포함)로 지정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

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피보험자(종업원)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(단체 포함)로 지정되는 계약은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한다.

Chubb. Insured.SM